

독일판례 2

방송프로그램제목을 책제목에서 도용한 것은 위법

Miichen 지방법원 제 1 부 1986.7.4 자 판결 -2108837/86 사건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16 조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표제보호의 권리는 반드시 영업체와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은 아니므로, 서적의 발행인도 역시 적극적으로 위 표제보호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16 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표시」를 보유하는 자라 함은 영업체나 영세기업 이외에도 인쇄물도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 16 조에서 말하는 표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라든가, 일반적 인 언어 사용관행으로부터 선택된 것이라든가 또는 만지 일정한 종류만을 표시하는 표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표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언어관행과는 상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떤 대상을 특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위 법상의 표제로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3. 책의 이름으로서의 「Dasgab'snureinmal(그것은 단지 한번 존재했었다)」라는 표제와 유행가 및 영화음악에 관한 방송프로의 제작으로서 의 「Das gab's nur einmal」 사이 에는 서로 혼동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개요

가처분 신청인은, 어떤 잡지에 연재된 기사의 저자인 바, 위'기사는 1956년에 처음 게재된 이래 그 후 취 기사는 「Das gab's nor einmal 이라는 제목으로서 책으로 출판되었었다. 위 책은 처음에는 Sternbcher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가, 그 후에는 Holden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다시 1985년 이후에는 Ullstein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가처분 피신청인은 1984. 12. 13. 이래 수회에 걸쳐서 「Das gab's nur einmal」이라는 제목으로 TV 음악프로를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위 프로를 방송함에 있어서는 제목 이외에 따로 작회의 방송내용에 적합한 부제목을 사용했었다.

가처분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가처분 피신청인에 대하여 표제보호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신청인은 이미 수십년 동안 위 제목을 사용해 왔으며, 특히 위 책의 제목으로 독일내에 있어서는 피신청인보다 훨씬 오랫동안 위 제목을 사용해 왔고, 그리하여 이러한 제목은 그의 책을 다른 것들과 구별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책의 제목과 위 TV 프로 제목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로써 벌써 위 두 제목 사이에는 혼동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판결이유

1. 가처분 신청인의 이 사친 신청은 이유 있다. 왜냐하면, 가처분 피신청인은 「Das gab's nur einmal」이라는 잡지의 기사제목을 특정 TV 프로의 제목으로 사용하였고, 위 TV 프로 제목은 가처분 신청인이 쓴 책의 제목과 서로 혼동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부정경쟁방지법 제 16조 제 1항).

(1) 가처분 신청인은 그가 주장하고 있는 중지청구권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1956년에 최초로 게재되고 그 제목이 「Das gab's nur einmal」이었던 기사의 저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 기사는 그 후 책으로 출판되었고, 1985년 이후에는 Ullstein 출판사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가처분 피신청인의 편와는 반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표제보호라는 것은 영업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의 발행인도 역시 위 표제보호청구권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은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 16조의 문언 자체로부터 이미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조문에서 성명의 보지자 또는 「특정한 표시」의 보지자로서는, 「영업체」나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인쇄물」도 역시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러 상이한 「성명보지자」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성명이나 특정표시는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반드시 영리기업이나 또는 인쇄물과

관련하여서만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처분 신청인은 1945년 이래 Ullstein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된 기사의 집필자로서 능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OLG München in Schulze OLGZ, 145 참조).

(2) 「Das gab's nur einmal」이라는 표제는 여기 부정경쟁방지법 제 16조 제 1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표시」에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 표제는 특정되어 있고, 또한 위 작품을 다른 작품들과 구별시키는 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Das gab's nur einmal」(그것은 단지 한번 존재했었다)라는 표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용구로서, rDer Kongreß tanzt」라는 영화가 나온 이후로는 「Das gibt's nureinmal, das Kommt me wieder(그것은 단지 한번 존재한다. 그것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노래의 제목 및 후렴으로써 별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표제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표제의 새로움이나 창조적인 성격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이 사전 가처분 신청인도 역시 위 저작권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제 16조에서 규정하는 표제보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일반적인 언어관행으로부터 추출한 것이거나 또는 단순한 종류만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언어관행과는 달리 특정한 표제로서 사용되고 또한 그럼으로써 어떤 대상을 특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OLG München GRUR 57, 140 m. wN. 참조) 이에 반하여 가처분 피신청인은 1922. 2. 17자 Reich 병원의 판결(RGZ 104. 88. 90)을 원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판결에서는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서, 어떤 다른 작품을 위하여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제목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에 개별화의 기능이 이미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원은 위 판결이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컨대, 원래 특정하는 효력을 가진 제목이 다른 작품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그 개별화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혼동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사회의 일반인들은, 어떤 작품들이 동일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들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 작품들이 예를 들어 책과 TV 프로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작품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즉 원래의 책에 의하여 만들어진 TV 프로인 것)으로 추측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Reich 법원의 판결은, 어떤 소설이나 또는 간행물에 「Das gab's nur einmal」이나 또는 이와 혼동할 수 있는 표제를 부여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1. 「표제의 특정성」은 인결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München 고등법원의 앞서 본 판결과 관련시켜서 이해할 경우에만 비로소, 그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

스스로도,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위 표제가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는 Das gab's nur einmal」이라는 표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6 조에서 말하는 특정한 표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가처분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가처분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표제보호의 권리는, 가처분 신청인의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의 절차에서 소명되어진 바와 같이 1956년 이래로 약 35만부의 책이 판매되었고, 그리고 위 책은 Holden 출판사가 파산한 이래 약 4주 동안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위 4주의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위 책은 Ullstein 출판사에 의하여 다시 출판되어, 시중에서 다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4) 위 가처분 신청인의 책의 제목과 가처분 피신청인의 TV 프로 제목과는 서로 혼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위 2개의 제목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으로부터 명백하다. 위 책과 위 TV 프로의 내용은 그 주제의 면에 있어서도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하여, 위 제목의 동일성에 기한 혼동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가처분 신청인의 위 책은 1945년 이후의 독일영화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가처분 피신청인의 위 TV 프로는, 오스트리아 라디오방송국의 1986. 4. 30자 가처분신청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면, 「Evergreen의 인기유행가 및 영화음악」을 방송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가처분 신청인의 위 책과, 가처분 피신청인의 위 TV 프로와의 사이에는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연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가처분의 권리에 대하여는 역시 가처분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그 급박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25조에 의하여 추정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인은 그의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절차에 의하여, 가처분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위 제목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1986. 4. 8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가처분 신청인은 1986. 5. 7에 이 사건 가처분의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인이 이 사건 표제보호권의 침해에 대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단기간내에 그 구제를 청구해 오지 않았다는 비난을 원고에 대하여는 할 수 없을 것이다.